

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청원번호 : 제55호
2. 청 원 자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, 고진광 외 77명
3. 소개의원 : 최기찬 의원(더불어민주당, 금천구2, 교육위원회)
4. 접수일자 : 2022년 5월 27일
5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7일

II . 청원요지

- 200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현재 활동이 없는 무실적법인이 되었는데, 재단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조치하여 줄 것을 청원함.

III .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

-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때인바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설립 목적대로 학생 인성 함양에 기여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IV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청원법」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청원은 2022년 5월 27일 최기찬 의원의 소개로 고진광 외 77명 으로부터 청원번호 제55호로 제출되어 2022년 6월 7일 우리 위원 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청원은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(이하 “법인”)은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한 ‘사랑의 일기 시상사업’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2003년에 설립된 공익법인¹⁾입니다.

[표-1]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현황

설립일 설립자(대표자)	소재지	목적사업	기본재산	임원
2003.7.22. 고진광(문병호)	종로구	장학사업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 사랑의 일기상 시상	현금 3억	11명 (’07년 임기만료)

- 그러나 200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, 동 법인은 2004년에 기본재산 3억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밝혀져 이를 2009년 12월 까지 보전 조치하도록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.

그러나 동 법인은 기본재산 보전을 이행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5

1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 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“공익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이행계획만 제출하였습니다.

[표-2]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기본재산 보전 이행계획 제출 현황

일자	내용
2011. 1. 26.	감사 결과 보전 조치 이행 지연 소명 및 기한 연장 요청(2010.6월 말 → 2011.12월 말까지)
2013. 5. 2.	법인 정상화 지연 경위 소명 및 향후 계획 보고 - 기본재산 보전계획 변경 - 임원 정상화 계획: 2013. 7. 23. 이전까지 이사진 재구성하여 정상화 추진
2015. 11. 9.	- 정상화를 위한 대안 보고 - 교육청과 이사회 소집 및 승인 신청 사전 협의

○ 또한 동 법인은 2007년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²⁾인바,

동 법인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이 동 법인의 기본재산 보전과 이사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동 청원은 취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나. 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대한 검토

○ 교육청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였을 경우 해당 법인에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‘경고’ 처분을 내리고, 보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‘고발’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.³⁾

○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동 법인의 기본재산 임의 처분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 뒤 기본재산 보전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

2) 장기 무실적 법인(3년 이상 예·결산서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활동이 없는 법인)

3) 2021 공익법인 실무지침서(서울시교육청)

[표-3] 공익법인 행정처분 기준

지적사항	행정상 처분 기준		
	고발	경고	주의
○ 기본재산 임의 처분 - 5억 이상 또는 기본재산의 50% 이상 손실	○	○	

○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설립의 허가권자인 주무관청으로서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나⁴⁾, 서울시교육청이 경고 처분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주무관청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이 기본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한편 현재 동 법인은 2007년도에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,

공익법인이 이사회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처분 대상이고⁵⁾,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하는바⁶⁾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이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① 2022.6.7. 동 법인 이사장에게 기본 재산 보전 이행을 2022.12월말까지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, 향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예정이고 ②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관계자들에게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 예정임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832, 2022.6.8.).

4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감독)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.

5) 공익법인 행정처분 기준

지적사항	행정상 처분 기준		
	고발	경고	주의
○ 이사회 운영 소홀		○	○

6)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감사 등)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,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-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동 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·지도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, 다른 법인들에 대하여도 동 청원과 같은 조치 요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으로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- 이상으로 「재단법인 사랑의 일기재단 정상화에 관한 청원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